

2023년 기술융합디자인혁신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

- 우수상품디자인개발 분야 -

(재)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혁신 상품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, 「기술융합디자인혁신지원사업」 우수상품디자인개발 분야의 지원과제 모집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7일

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장

1 지원개요

- 사업명: 기술융합디자인혁신지원사업
- 사업목적: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혁신 상품개발 및 사업화 촉진으로 디자인경영 선도기업 육성
- 지원분야 : 우수상품디자인개발(제품디자인개발)
- 지원내용: 디자인 관여도가 높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품개발을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
- 지원규모: 총 8개 과제 내외
- 개발기간: 협약체결 후 5개월 이내
- 지원대상 및 자격(공고일 기준)
 - 참여기업: 대전지역 소재 중소기업
 - ※ IOT 가전, 헬스케어, 고급소비재, 로봇, 모빌리티 등 디자인 관여도가 높은 분야 (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제조/서비스 분야)
 - 개발기업: 대전지역 소재 디자인전문기업(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 기업)

2 신청방법 및 세부 지원내용

- 신청방법: 참여기업/개발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사업신청
- 신청과제의 선정: 1개 과제 이내 선정(중복기업 선정 불가)
 - ※ 본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추후 공고 예정인 「기업맞춤형디자인개발」 분야 신청 불가
 - ※ 기업맞춤형디자인개발지원사업 : 기업 보유 상품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시각디자인 지원
- 세부 지원내용

지원분야	지원범위	지원규모	지원금액
우수상품 디자인개발	제품디자인개발·리뉴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디자인 기획, 디자인 후보안 도출, 3D렌더링 및 제작사양, 디자인목업 제작 시방서, 지식재산권 출원, 디자인법률자문 등 	8과제 내외	과제당 24,300천원 내외

- ① 참여기업/개발기업 간 개발범위 협의 및 확정
 - ※ 개발범위를 고려하여 디자인개발비 산정(과도한 개발범위 지양)
 - ② 선정과제의 지원범위는 과제 특성 및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- ③ 개발범위 외 별도의 개발은 본 사업 협약내용과 관련이 없으며, 참여기업/개발기업 간 해결 사항임
- 지원금액: 총 개발비용의 90% 지원

(참여기업 민간부담금, 개발사업비 총액의 10% 이상 현금 부담)

- 개발사업비는 개발기업(디자인전문기업)에 지급하며, 부가가치세는 개발사업비 총액(지원금+민간부담금)의 10%로 참여기업이 부담

※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및 의결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음

(단위: 천원)

지원분야	㉠지원금(90%)	㉢민간부담금(10%)	사업비 총액(㉠+㉢)
우수상품디자인개발	24,300	2,700	27,000

※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10%(통상 20%) 이상으로 책정

○ 사업비 계상

- 사업비 계상시 인건비, 간접비, 창작료 등 아래의 비목별 사업비 상·하한 금액 내에서 계상하며, 신청서식 【별첨】 ‘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’에 따라 예산 작성

비목별 사업비 상·하한금액					
사업명	지원분야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창작료
기술융합디자인 혁신지원사업	우수상품 디자인개발	50%~60%	-	~10%	~10%

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○ 선정절차

- ① 과제신청 접수 → ② 사전검토: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확인 → ③ 서류평가(필요시) → ④ 경영상태 평가 → ⑤ 발표평가: 지원대상 과제선정
 ※ 사업공고 후 접수되는 신청 과제 수를 고려하여 [1단계 서류평가]를 진행할 수 있음

○ 평가내용

- **【서류평가】** 디자인개발 필요성, 디자인개발 실행가능성, 성장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후보과제 선정
- **【경영상태평가】** 과제 신청기업별 재무건전성 평가 ※ 선정평가 시 평가점수 합산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(총 10점)	
		참여기업	개발기업
경영상태	참여기업/개발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(배점기준: 부채비율 0~3점, 유동비율 0~2점)	5	5

- ※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평균치로 평가
- ※ 창업 5년 미만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또는 개발기업의 경우 3점 부여

- **【발표평가】**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참여·개발기업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선정/ 4월 1~2주 예정
 ※ 발표평가 시 프레젠테이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기업의 과제책임자가 발표
 ※ 선정기업(지원대상과제) 중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과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하여 차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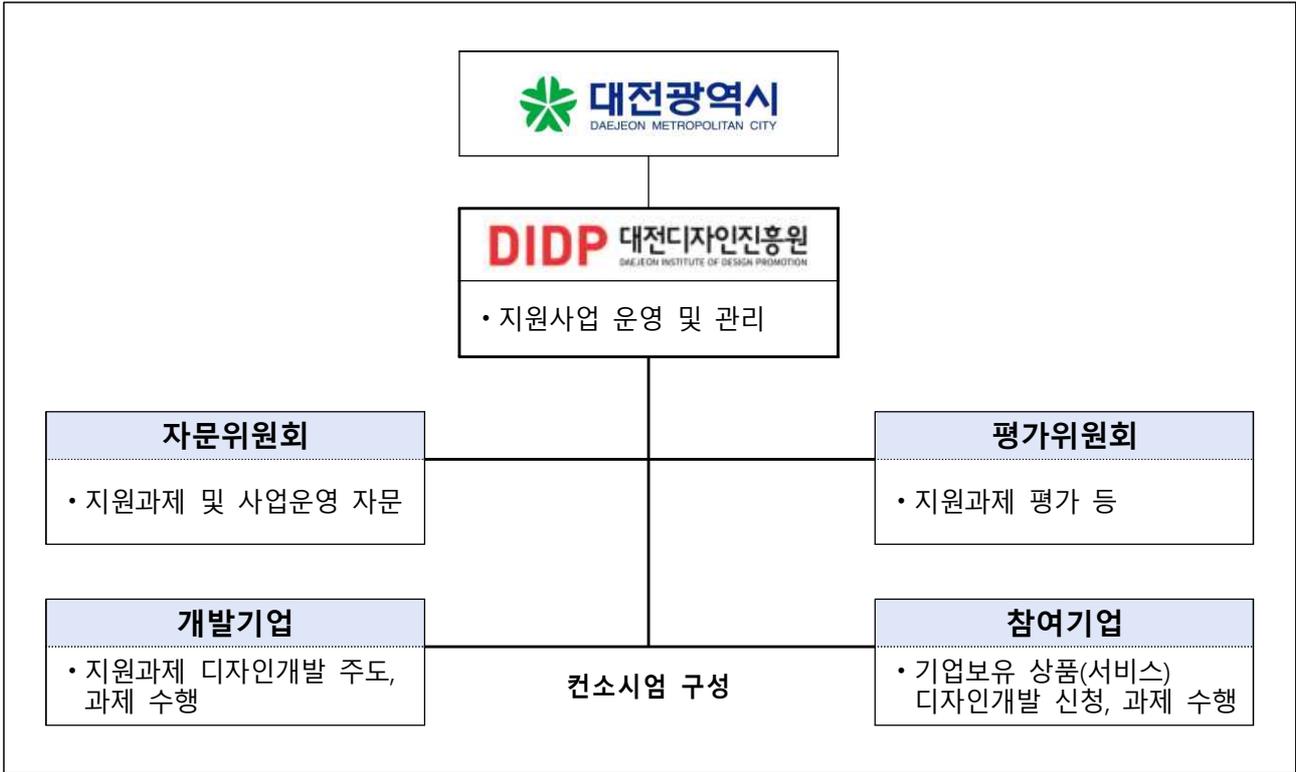
○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(100)
경영상태	참여기업·개발기업 재무건전성(부채비율 등) ※경영상태평가 점수합산	10
디자인개발 필요성	디자인개발의 필요성 및 개발목표의 적정성	20
디자인개발 실행가능성	개발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	20
	개발비용의 적정성(디자인개발 사업비 예산계획)	10
	개발기업 수행능력(과제책임자, 기업관리, 지원능력 등)	20
성장가능성	참여기업 성장가능성,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, 상품(고유브랜드)·사업화 발전가능성 등	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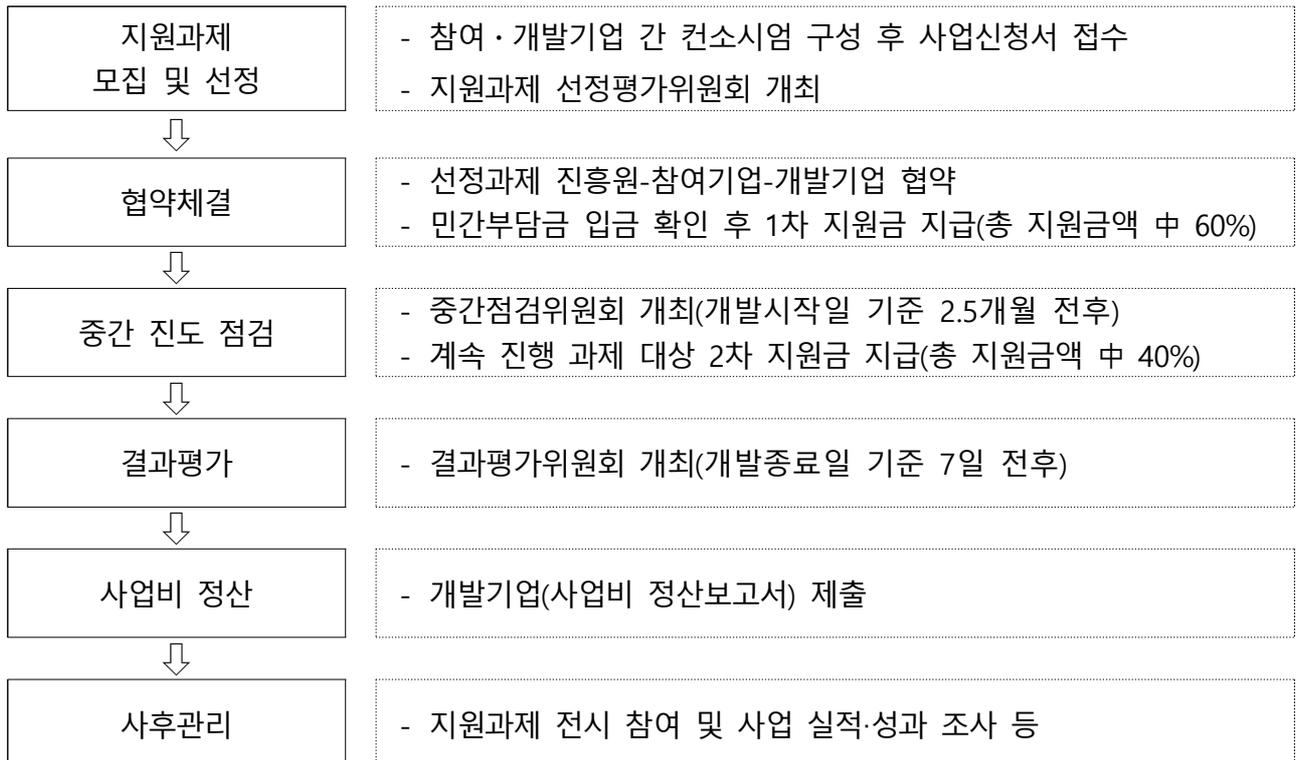
- ※ 과제선정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 추진체계 및 절차

○ 추진체계



○ 주요 추진절차



※ 사업 진행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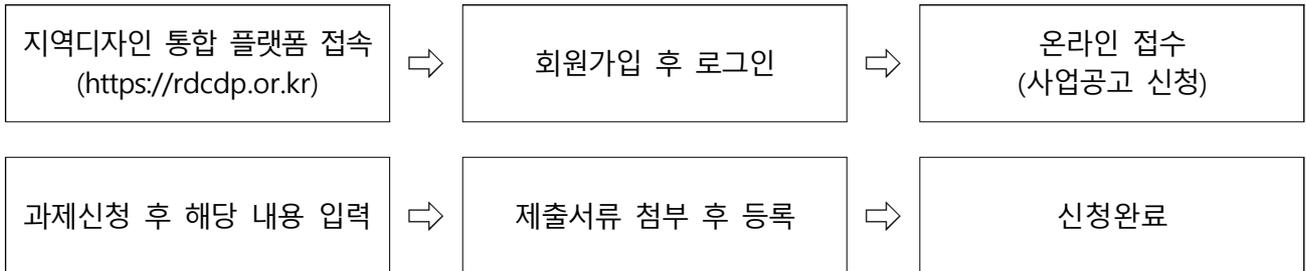
5 접수방법 및 기한

○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

- 사업공고일 ~ 3. 22.(수) 18:00까지 / 24일간

○ 접수방법

- 지역디자인 통합플랫폼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



○ 온라인 접수절차

- (1) 지역디자인통합플랫폼(https://rdcdp.or.kr/) 접속
- (2) 회원가입 및 로그인(참여·개발기업 모두 회원가입 必)
- (3) 지원사업공고-2023년 기술융합디자인혁신지원사업(우수상품개발지원) 모집공고 클릭
- (4) 우측 접수기간 및 공고일 아래 '과제신청' 버튼 클릭
- (5) 개발기업 정보 입력: 수행(주관)기업 정보의 '내 기업정보 불러오기' 활용
- (6) 참여기업 정보 입력: 수혜(참여)기업 정보의 '타기업정보 조회' 활용

※ 타기업정보 조회 시 정보 조회가 필요한 기업의 동의 필요

(기업동의 안내) 조회 대상기업의 마이페이지-기업정보 동의 설정-기업 검색-동의설정-동의기간 입력 후 '설정완료'

※ 유의사항

- 1) 접수마감일(3. 22.(수)) 18시에 전산접수 시스템 자동마감(시간엄수 필수)
- 2) 플랫폼 내 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일체(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) 스캔본 및 한글파일 첨부·제출
- 3) 온라인시스템 등록 후 e-mail로 정상 제출여부 확인 必
 - 정상 제출여부 확인: 한가희 팀원(gather0919@didp.or.kr, 042-930-7823)

6 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별첨 신청서식(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) 참고

- **【유의사항】** 참여·개발기업은 사업신청 및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, 반드시 지원자격에 대한 결격여부를 상호 확인하고 사업 신청할 것

구 분	제출서류	제출대상	
		참여기업	개발기업 (주관/공동)
사업신청 제출서류	① (공통) 사업계획서【서식1】		●
	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당해년도 발급분)	●	●
	③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(재무제표증명원) / 2020~2021년도 -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(복식부기신고의무대상자가 아닌 경우)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- 창업기업의 경우, 해당기간의 자료만 제출 - '22년 결산 완료 시 '22년 자료 제출 필요	●	●
	④ (공통) 유사과제 검색결과 확인서(기본값 검색)		●
	⑤ (공통)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【서식2】		●
	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각 1부)	●	●
	⑦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	-	●
	⑧ 과제선정 평가위원 추천표【서식3】	-	●
선정기업 제출서류 (별도안내)	① 과제 참여인력 증빙서류 -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	●	●
	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●	●
	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●	●
	④ 특허, 제품인증 등 주요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- 사업계획서에 실적을 기재한 기업에 한해 증빙 제출	●	●
	⑤ 제재정보조회 결과 확인서(기본값 검색) - 신청기업, 참여·개발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각 1부	●	●
	⑥ (공통) 서약서		●
선정평가 이후 선정된 과제의 참여·개발기업은 '선정기업 제출서류' 추가 제출 ※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미제출 시 지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			
제출안내 (중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사과제 확인 방법: www.ntis.go.kr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조회 ○ 제재정보조회 확인 방법: www.ntis.go.kr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○ 온라인 플랫폼 접수 시, 제출서류 순서대로 취합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- 파일명(사업신청 제출서류 ①~⑧순 취합): 참여기업명(개발기업명) 우수상품.pdf - 제출서류는 인감 날인 후 제출,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○ 상기 자료 외, 본 사업 관련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○ 발표평가 시, 발표자료 제출(대상기업에 한해 일정 개별 통보) ○ 최종선정 후 협약 시, 원본서류 별도 제출 예정 		

7 지원제외 대상

○ 지원제외 대상

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1)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및 기업, 총괄책임자
- 2) 기업의 부도
- 3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4) 공고일 전일기준 등록취소, 휴업, 폐업, 업무 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(선정기업은 사업종료 시까지 당해 자격 계속 유지)
- 5)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6)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7)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
- 8)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- 9) 동일한 과제로 타 기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
- 10)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- 11)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
8 기타사항 및 문의처

○ 기타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비 계상 시 【별첨】 ‘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’에 따라 작성
-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접수현황에 따라 연장 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, 대전디자인진흥원의 해석에 따름

○ 유의사항

- 본 공고는 지역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기반으로, 참여기업의 디자인 가치 제고와 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'디자인 프로세스 중심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'임

(디자인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목업 제작, 단순 납품 및 용역 형태의 디자인 개발 등은 인정하지 않음)

○ 문의처

- 대전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박은경 주임
(연락처) 042) 930-7826 / (E-mail) eun@didp.or.kr